

10. 驚音·振動規制法施行規則中改正令

환경부령 제33호 1997. 10. 22

주 요 골 자

- 가. 착암기·공기압축기 등 소음·진동이 특히 심한 특정기계·장비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모두 사전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특정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에 한하여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특정기계·장비의 범위에 발전기·로우더 및 압쇄기를 추가함(제33조 및 별표 8).
- 나. 교통소음·진동의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합병원·학교·공공도서관 및 공동주택의 주변 도로에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37조의 2).
- 다. 제작차에 대한 소음의 인증시험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것을 자동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장비의 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5조).
- 라. 모법에서 운행차에 대한 소음의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을 정함(제54조의 3 및 별표 13의 2).
- 마. 소음·진동배출시설 중 직기의 경우 제조기술이 향상되어 소음·진동이 감

소음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기의 규모를 10대 이상에서 40대 이상으로 조정함(별표 1).

바. 2000년부터 자동차 분류체계를 국제규격(ISO)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2002년부터는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함(별표 3 및 별표 11).

개정 이유

운행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소음·진동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건설소음·진동과 생활소음·진동을 통합하여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제하도록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1997. 3. 7, 법률 제530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정비하고, 최근 자동차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주요 소음·진동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소음·진동의 규제를 위하여 제작자의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제도를 개선하며, 그밖에 건설 공사장의 중장비 사용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조정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